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 2.21.(화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자본시장제도팀	책임자	국 장	황선오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박재영	(02-3145-7590)
			팀 장	유석호	(02-3145-7587)

**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·수수료를 지급·부과 관행을
종합점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**

- 예탁금 이용료를·주식대여 수수료를·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 추진 -

주요 내용

-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·수수료를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.
 -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, 주식대여 수수료를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에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,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를, 주식대여 수수료를,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,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 -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·수수료를 지급·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.

I.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

- **(예탁금 이용료율)**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*하는 추세이나,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* [이용료율] ('20년말 평균) 0.18% → ('22년말 평균) 0.37% (금투협회 공시자료)

-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·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,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*하고자 합니다.

* (예시) 이용료 점검주기 명확화, 이용료 산정기준·지급시기 공시서식 마련

- **(주식대여 수수료율)**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*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아 적정 수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*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경우, 증권사는 동 주식을 기관 등에 대여하고 개인에게 주식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

- 이에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*하고, 증권사별·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·추진하고자 합니다.

* (예시) 해외의 주식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하여 개선안 마련

- **(신용융자 이자율)** 최근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와 관련하여 실제 조달금리 수준이나 위험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.

- 이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,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*하고자 합니다.

* (예시) 이자율 산정체계 점검, 대면·비대면개설 계좌의 이자율 구분 공시

II.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금년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자·수수료율 부과·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며,

- 이러한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·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·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